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7. 14(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7.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4. 7. 2.

라. 상정일자 : 2014. 7. 10(제2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O 제안설명: 행정관리국장 박송철

O 검토보고: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O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O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정책추진·역점사업·주요사회 이 슈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목적달성을 위한 보좌 기능 강화

나.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및 제16조(별정직공무원)
- O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다. 주요내용

O 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공무원을 배치함에 따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함.(안 별표 3)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7.1.일자로 취임한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검토내용

- 안 제4조 제1항 단위기관별 정원표(별표3)에 "별정직"란을 신설하여 제3조 제1항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정직·정무직 0.1%≒3.089명 이내)에 부합하는 2명을 5급 상당 이하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시 함께 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인사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비서실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서도 정책결정에 관여하는지 (답변) 교육감 비서 증원은 교육감 보좌와 소통을 위해서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최용덕,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O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7. 소수의견 요지

O 없음

8. 기타사항

O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 지급별	·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76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85				
3급	7		7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 상당 이하 소	계 2				
특정직 소계	186				
일반직 4급 상당 ㅇ	l상 27		18	9	
장학관·교육연구관			10	9	
일반직 5급 상당 ㅇ	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159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지원 청	공립의 각급학교	2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지원 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76						총계	3,276					
정무직 소계	1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87						일반직 소계	3,085					
3급	7		7				3급	7		7			
4급	26	1	21	4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47						5급 이하	3,045					
전문경력관	7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연구사	2					
특정직 소계	186						별정직 소계	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7		18	9			5급상당 이하 소계	2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u> </u>				특정직 소계	186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 학사교육연구사	15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7		18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 학사교육연구사			1		•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사항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 ② (생략)

-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u>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 계급별로 책정하되,</u>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③ (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 (생략)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 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